

-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審 査 報 告 書

2006. 5. 1.
제249회 임시회

1. 심사 경과

가. 발 의 자 : 김 홍운 의원외 7인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6년 4월 14일

○ 회부일자 : 2006년 4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6. 4. 27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 홍운 의원)

가.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의원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 일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제명 등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
-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10,000원으로 조정(안 13조의 별표 2)
 - 종전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변경

- 도의원 및 교육위원이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0조)
 -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조치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본 조례안의 주된 개정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도의원의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에서 “11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의원의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지방자치법 개정당시 회기수당에 해당하는 110,000원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9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구분	액 수
수당	110,000원 / 1일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상 제1호 상당액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u></p>	<p><u>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 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 조의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② (생략)</p> <p>③도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u>지방자치법</u>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u>지방자치법</u>」 ……</p>
<p>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생략)</p> <p>② <u>지방공기업법</u>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u>지방공기업법</u>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같음하고 필요시 위원은 이를 재검할 수 있다.</p>	<p>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현행과 같음)</p> <p>② 「<u>지방공기업법</u>」 ……</p> <p>…… 「<u>지방공기업법</u>」 ……</p>
<p>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u>지방자치법</u>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u>지방자치법</u> 시행령」 ……</p>

현행	개정안													
<p>제10조(수당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u>도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이 위원인 경우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② (생략)</p>	<p>제10조(수당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p>	<p>제13조(지급기준) 「공무원여비규정」.....</p>													
<p>[별표 2]</p> <table border="1" data-bbox="183 1086 774 1355"> <thead> <tr> <th>구분</th> <th>액 수</th> </tr> </thead> <tbody> <tr> <td>수당</td> <td>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td> </tr> <tr> <td>여비</td> <td>국내여비규정 “별표2”여비 지급구분표상 부지사 상당액</td> </tr> </tbody> </table>	구분	액 수	수당	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	여비	국내여비규정 “별표2”여비 지급구분표상 부지사 상당액	<p>[별표 2]</p> <table border="1" data-bbox="821 1041 1396 1400"> <thead> <tr> <th>구분</th> <th>액 수</th> </tr> </thead> <tbody> <tr> <td>수당</td> <td>110,000원/1일</td> </tr> <tr> <td rowspan="2">여비</td> <td>「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여비</td> </tr> <tr> <td>지급구분표상 제 1호 상당액</td> </tr> </tbody> </table>	구분	액 수	수당	110,000원/1일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여비	지급구분표상 제 1호 상당액
구분	액 수													
수당	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													
여비	국내여비규정 “별표2”여비 지급구분표상 부지사 상당액													
구분	액 수													
수당	110,000원/1일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여비													
	지급구분표상 제 1호 상당액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개정 1999.8.31, 2003.7.18, 2005.8.4>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5.8.4>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8.4>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1] <개정 2005.1.7, 2006.1.12>

여비지급구분표(제3조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특 호	가목	대통령
	나목	국무총리
	다목	감사원장·국무위원·대통령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검찰총장 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을 제외한다)대장 기타 국무위원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라목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14등급직위 외무공무원,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치안 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의 부총장, 중장 기 타 차관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제1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가목의 연구관 기타 차관보 또는 1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10호봉 이상의 검사(특호라목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다),1호봉인 헌법연구관 3. 치안정감·소방총감 4.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특3호봉의 대학교원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전문대학의 학장, 교육부 실장,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5. 소장·준장 	
제2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급 및 3급 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제2호 가목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임용규정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지도관 기타 2급 또는 3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9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3. 치안감·경무관·소방정감·소방감 	
제3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부장인 장학관, 국제교육진흥원장인 장학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인 편사연구관, 국립특수교육원장인 장학관,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5. 대령·중령 	
제4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 및 라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별표 2의2] 제1호 나목 및 다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기타 4급 또는 5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 3.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4. 소령·대위·중위·소위 	
제5호	위 특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